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4861

제안연월일 : 2025. 12.
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자	경 과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0681호)	정진욱의원	2025. 6. 9.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8. 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0939호)	최민희의원	2025. 6. 19.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8. 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1592호)	조인철의원	2025. 7. 21.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8. 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290호)	이훈기의원	2025. 8. 2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2025. 11. 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18.)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1. 24.)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의결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하면서 디지털취약계층이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이동통신사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취약계층은 관련 정보에의 접근이나 신속·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아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안 제18조의2 및 안 제25조의2 신설)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8조제3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2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5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안전한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디지털역량지원센터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침해사고 발생사실 및 대응 방법·절차 등 관련 정보의 디지털취약계층 맞춤형 고지·안내 및 상담
2.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고·접수와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제공기관 연계
3.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종료 시 제2항에 따라 지정

한 전담기관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해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① · ② (생 략)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5. ~ 15. (생 략) ④ · ⑤ (생 략) <신 설>	제8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6. ~ 16. (현행 제5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안전한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디

	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2(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디지털역량지원센터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침해사고 발생사실 및 대응방법·절차 등 관련 정보의 디지털취약계층 맞춤형 고지·안내 및 상담 2.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고·접수와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제공기관 연계 3.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종료 시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해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